

<붙임1>

권역별 ‘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’ 설치 현황

지 역	설치기관	업무분장	전 담자 전 화 번 호(FAX)
수도권	공정위 서울 사무소	건설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(건설) 02-2110-6148 (02-2110-0654)
		제조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(제조) 02-2110-6125 (02-2110-0655)
	분쟁 조정 협의회	공정거래조정원	사건처리 및 상담 02-6363-9275 (02-6363-9299)
		건설협회, 전문건설협회	사건처리 및 상담 02-3485-8382 (02-516-5360)
		중소기업중앙회	사건처리 및 상담 02-2124-3132 (02-780-2448)
부산·경남권	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	사건처리 및 상담	051-460-1041 (051-460-1004)
광주·전라권	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	사건처리 및 상담	062-975-6841 (062-975-6800)
대전·충청권	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	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	044-200-4603 (044-200-4657)
	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	사건처리 및 상담	042-481-8020 (042-481-8023)
대구·경북권	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	사건처리 및 상담	053-230-6341 (053-742-9150)

<불임2>

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

-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장기(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)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
-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(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(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) 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, 어음 할인료 ·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